24, 12, 16, 오후 2:12 인쇄

지방신체등급 판정 심의위원회 운영

지방신체등급 판정 심의위원회 운영

운영배경

병역의무이행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므로 신체등급 판정은 신중을 기해야 함

병역의무 면제자가 향후 떳떳하게 사회활동을 할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공인해줄 의무가 있음.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한 청탁,압력이나 부조리를 예방함.

심의대상

질병상태가 명백한 질환으로 신체검사 결과 5.6급 판정대상자(명백하지 아니한 질환은 중앙병역판정검사 실시)

중점관리대상 질환자로서 신체등급 4급부터 6급 판정대상자

신체등급판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

병역판정검사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4~6급 대상자

법 제65조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여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된 사람(다만, 재검결과 해당 질병에 의한 신체등급 3급 판정대상자는 제외)

심의위원

병역판정관(위원장),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해당 질병담당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등

심의결과

전원합의에 의한 심의

5,6급대상자 의견 불일치시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정밀검사 의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운영

운영배경

병역비리 사회문제화에 따른 병역면제 판정에 대한 2심제 실시

군병원 정밀검사 폐지에 따른 정밀신체검사기관 필요

중앙병역판정검사대상자

신체등급 5급·6급 판정대상자(다만, 병무청장이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하거나 비리개입 소지가 없어 "중앙병역판정검 사소 의뢰제외 질환"으로 선정된 질환은 제외)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사람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하여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지방위원회 심의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

병역판정검사의사의 4촌 이내 혈족인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 의사 본인이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로 판정하게 될 사람

24. 12. 16. 오후 2:12 인쇄

의무사관후보생,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소지자 중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 판정대상자

병역판정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현역병입영 후 같은 질병으로 2회 이상 귀가된 사람으로서 재신체검사 결과 해당 질병에 의한 신체등급 3급 판정대상 자

현역병 입영 후 3회 이상 반복 귀가된 사람으로서 재신체검사 결과 최종 귀가된 질환으로 신체등급 3급 판정대상자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정신건강의학과 제105호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로 7급 재신체검사와 정밀심리검사를 각각 2회 이상 실시한 사람 중 신체등급 4급에 해당되는 사람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검사방법

전문과목(분야)별로 세분화된 병역판정전담의사와 MRI 등 최첨단 의료장비에 의한 정밀검사 실시

해당과 복수의 병역판정전담의사의 판정이 원칙이나 판정곤란자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등급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급 결정

※ 지방청 심의위원회 운영 담당자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5
부산울산지방병무청	051-667-5282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79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335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1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7	인천병무지청	032-454-2331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313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4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1